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 단지안에 건설하는 복리시설중 구매시설, 유치원등 일부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의 구매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지설정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의무를 완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나.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단지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6조(단지안의 시설)</p> <p>②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존치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일반목욕장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p> <p>4. 구매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p> <p>5. 생활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p> <p>6.~9. 생 략</p> <p>제50조(구매시설)</p> <p>②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 세대당 0.3제곱미터(시·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p>	<p>제6조(단지안의 시설)</p> <p>② 좌동</p> <p>1. 좌 동</p> <p>2. 좌 동</p> <p>3. 일반목욕장</p> <p>4. 구매시설</p> <p>5. 생활시설</p> <p>6.~9. 좌 동</p> <p>제50조(구매시설등)</p> <p>②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이하 “구매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계는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구매시설등의 면적이</p>		<p>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p> <p>⑤ 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51조(생활시설)</p> <p>②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시설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는 당해 생활시설의 면적</p>	<p>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이를 1천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p> <p>③ 삭제</p> <p>④ 삭제</p> <p>⑤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51조(생활시설) 삭제</p>	

현 행	개정안	비 고	현 행	개정안	비 고
<p>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p> <p>② 제50조 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2조(유치원등) ②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과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p>	<p>제52조(유치원등) ② 삭제</p>		<p>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유치원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 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p>	<p>③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및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 및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하도급대금 청탁금지법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2,000만원미만에서 3천만원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전문건설업체가 예외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4천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18조제2항)

- 다. 건물, 교량, 터널, 댐등과 같은 동일구조물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리하여 동일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 하고, 도급한도액을 공사종류별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1년간 연기하여 '04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안 제22조제2항, 부칙)
- 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5호)
- 마.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을 기재하는 업무를 건설협회에 위탁함(안 제54조제1항)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2. 건축물, 교량, 터널, 댐등 공사의 성

질상 자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속 계약하는 공사

제3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한 공사중에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의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중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

액의 하한의 기재
1992년12월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13,789호의 부칙중 “1993년7월1일”을 “1994년7월1일”로 한다.

부 칙

②(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③(도급한도액기준금 변경신고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자본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